

「2022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제2차 모집 공고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발굴 및 추진 역량이 있는 국내기업 대상으로 「2022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제2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 8. 1.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목적

- 개도국 대상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전지구적 기후위기 대응노력에 기여하고, 대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지원
- 정부-민간 협력 기반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을 발굴·추진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

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을 발굴·추진할 역량이 있는 국내기업
- (지원유형) 개도국 내 환경 부문(폐기물·물관리 부문)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 및 감축설비 설치 지원
 - (타당성조사 지원) 차후 환경 부문 국제감축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또는 본타당성조사(이하 “본타”) 수행 비용 지원
 - (설치 지원) 환경 부문 국제감축사업으로서 ‘22년 내 감축설비 설치 개시가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감축설비 설치를 위한 투자비 지원

○ (지원부문) 폐기물 취급 및 처리, 물관리 등 환경부문 국제감축사업

<예시: 폐기물·물관리 부문 국제감축사업 사업분야>

부문	사업분야
폐기물	①매립가스 소각, ②매립가스 발전, ③팜오일 폐기물(고형), ④팜오일 폐기물(수처리), ⑤퇴비화, ⑥분뇨처리, ⑦폐기물 처리, ⑧폐수처리(혐기성), ⑨매립/바이오가스 공급망을 통한 연료전환, ⑩매립지 공기주입, ⑪산업폐기물, ⑫폐수처리(호기성) 등
물관리	①소수력 발전, ②복합 신재생(다목적 댐 활용 수상태양광 발전 등), ③조력 발전, ④수력 발전 등

※ 다수의 감축제품·기술 등을 보급, 판매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상기 사업분야(예시)에 부재한 사업도 폐기물/물관리 부문 해당 시 신청 가능

○ (지원규모) 총 10건 사업 선정(예타지원-4건, 본타지원-5건, 설치지원-1건)

구분	모집건수	지원비율	지원한도
예비타당성 조사지원	4건	지원대상 사업의 타당성조사 비용 중 최대 80% 지원	1건당 최대 2억원
본타당성 조사지원	5건		1건당 최대 4억원
설치지원	1건	지원대상 사업의 총 사업비 중 투자비의 최대 80%	1건당 최대 27억원

※ 설치지원 및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비, 건수의 경우 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동일 기업이 다수의 사업 신청 가능하나, 1개의 사업을 예타/본타/설치지원으로 중복 신청 불가(사업 추진 현황에 맞는 지원유형을 택1하여 신청)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적용 예시>

- (예시1) 예타 지원대상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비용이 총 3억원일 경우, 조사비용의 80% = 2.4억원이나, 지원한도(2억원)를 초과하므로 2억원까지만 지원, 나머지 1억원은 참여기업이 부담
- (예시2) 본타 지원대상 사업의 본타당성조사 비용이 총 4억원일 경우, 조사비용의 80% = 3.2억원이며, 지원한도(4억원) 이내이므로 3.2억원 지원, 나머지 0.8억원은 참여기업이 부담
- (예시3) 설치 지원대상 사업의 총 사업비가 50억원이고 이 중 투자비가 40억원, 총 운영비가 10억원(연간 1억원, 10년 운영)일 경우, 40억원의 80% = 32억원이며, 지원한도(27억원)를 초과하므로 27억원까지만 지원, 나머지 투자비 5억원 및 총 운영비 10억원은 참여기업이 부담
- (예시4) 설치 지원대상 사업의 총 사업비가 30억원이고 이 중 투자비가 20억원, 총 운영비가 10억원(연간 1억원, 10년 운영)일 경우, 20억원의 80% = 16억원이며, 지원한도(27억원) 이내이므로 16억원 지원, 나머지 투자비 4억원 및 총 운영비 10억원은 참여기업이 부담

- (지원범위) 타당성조사 지원은 인건비 및 경비 대상, 설치지원은 취득설비 투자비를 대상으로 정부지원금 지급
 - (타당성조사 지원) 지원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 국내·외 여비, 유인물비, 회의비(자문료, 세미나참가비, 번역료, 통역비), 임차료, 위탁용역사업비 등
 - (설치 지원) 감축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운전비 등
- (지원기간) 사업 선정 및 공단-지원기업 간 협약 체결('22. 10월 예상) 이후부터 각 사업별 종료일*까지
 - * 각 사업별 소요기간에 따라 최대 2023년 11월까지 사업기간 설정하여 신청 가능

3. 지원자격 및 신청제한

- (지원자격) 환경 부문 국제감축사업을 추진·발굴할 역량이 있는 국내기업에 한함

<국내기업 기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상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한 기업(대·중견·중소기업 모두 신청 가능)
- 비영리법인 및 그 밖의 법인
- 국내기업 등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 법인)

- (예타 지원) 환경 부문(폐기물·물관리) 국제감축사업으로 추진이 유망한 사업 대상 지원 신청 가능
- (본타 지원)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완료한 사업이어야 하며, 동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제출 필요
 - ※ 기존 환경산업기술원, 한국플랜트협회 등 정부의 타당성조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사업도 신청 가능하나, 동일 조사항목 및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 대상이 아님을 신청기업이 직접 입증 필요
- (설치 지원) '22년 내 감축설비 설치 개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보고서 제출 필요

- ※ 타당성조사 결과 및 수준이 미흡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타당성조사 유형으로 재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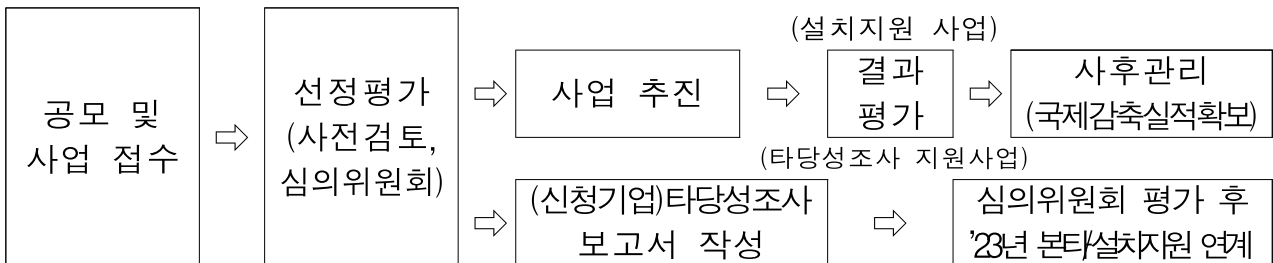
- (신청제한) 신청기업이 아래에 해당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 제한 및 신청서 반려 조치

1.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2.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 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4. 휴·폐업 중인 경우
5.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6. 정부지원금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8.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인 경우

$$\text{자본잠식률(\%)} = [(\text{자본금} - \text{자기자본}) / \text{자본금}]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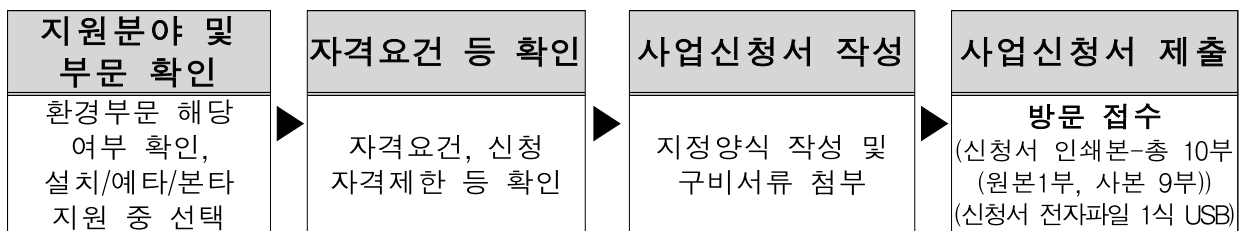
4. 추진절차

- 신청사업을 평가하여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 확정, 시범사업 연계 추진 또는 감축실적 분배 협약 체결 후 선정과제 사업 추진, 사업관리 등 실시



5. 신청방법

-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열린경영-공지사항에서 「2022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제2차 모집 공고 열람
- 공고문, 시범사업 관리지침, 신청 양식을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제본 및 방문 접수



※ 전자파일 제출시 PDF 및 수정가능한 한글/워드, 엑셀 형태 파일 포함

6.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2. 8. 1.(월) ~ 8.30.(화), 30일간
 - (사전공고 기간) 2022. 8. 1.(월) ~ 8. 10.(수), 10일간
 - (본 공고 기간) 2022. 8. 11.(목) ~ 8. 30.(화), 20일간
- ※ (접수기간) 2022. 8. 11.(목) ~ 8. 30.(화) 17:00까지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접수처: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관 2층 배출권관리처 사무실
상쇄제도운영부(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T/F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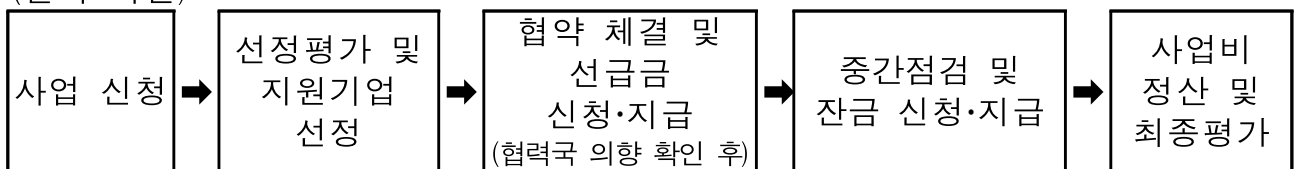
- ※ 접수마감 시간 내 접수일지 작성이 완료된 신청 건에 한하여 유효하며,
접수된 신청서 및 전자파일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T/F
(032-590-5622/5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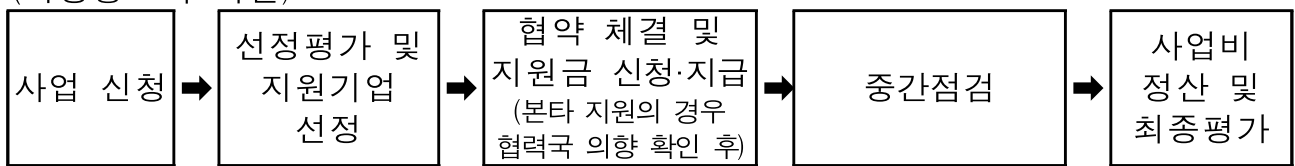
7. 지원절차 및 향후 추진 일정

○ 지원절차

(설치 지원)



(타당성조사 지원)



【신청기업】

【심의위·공단】

【지원기업·공단】

【지원기업·공단】

【공단】

○ 향후 추진 일정

세 부 업 무	일 정	세 부 업 무	일 정
(1. 공고 및 접수)		(3. 지원대상 사업수행)	
· 사전공고	'22.8.1.~8.10.	· 공단-지원기업간 협약 체결	'22.10월
· 본공고(신청 접수 · 마감)	'22.8.11~8.30.	· 지원금 지급(사업대상국 협력 의향 확인 후)*	
(2. 지원대상 선정 및 평가)		· 중간점검 및 잔금 지급	'22.하반기
· 사전검토	~'22.9월초	(4. 지원대상 사업완료)**	
· 사업 선정평가	'22.9월중	·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22.하반기
· 지원사업 확정			

* 설치지원 및 본타당성조사 지원사업에 한해 공단이 해당국 협력의향을 서면 확인하며, 확인 이후 선금 지급 가능

** 각 사업별 소요기간에 따라 최대 2023년 11월까지 사업기간 설정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본 공모에 따른 신청건수가 모집규모 대비 저조할 경우 지원내용을 변경하여 재공모할 수 있음

8. 제출서류

-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제출 필요

※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1호, 제4호, 제17호 참고, 각 지원유형별 해당 양식으로 제출

9. 사전검토

- 공단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전검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계획서 등의 수정, 추가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전검토결과 현저한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10. 사업선정 평가

-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평가기준) 신청기업 적정성(30점), 사업화 가능성(40점), 기대효과(30점)
- (설치지원 사업 평가기준) 사업의 적정성(35점), 사업화 가능성(30점), 감축실적 확보의 적정성(15점), 사업의 경제성(20점)을 심의위원회 정성평가, 우선협력 후보국에서의 사업은 가점(최대 2점) 부여

※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관리지침」 별표4 참고

<참고: 우선협력 후보국 목록 및 가점>

구분	가점	우선협력 후보국*
A그룹 (16개국)	2점	- (아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 파키스탄 - (중남미) 페루,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알제리
B그룹 (15개국)	1점	- (아시아) 네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제르바이잔 - (중남미)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 (아프리카) 우간다, 가나, 모잠비크, 세네갈, 탄자니아, 르완다

* 국내정책과의 연계성,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잠재량, 환경 부문 개선 필요성 및 국제감축사업 추진 가능성을 바탕으로 선정

※ 우선협력 후보국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도 신청 가능

- **(평가방법)**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업(기업) 중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 공단은 심의위원회 개최 시 필요에 따라 신청기업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책임자가 직접 발표 필요

※ 평가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당해연도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기업 선정 및 개별 통지

11. 협약 체결

- 최종 선정된 지원기업은 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필요
 - **(타당성조사 지원)**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타당성조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설치 지원)**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추진·지원 및 국제감축실적 분배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6호 참고
- 지원기업은 협약 이행 보증서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설치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진행단계를 구분하여 협약 전체기간이 아닌 연도별/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출 가능

12. 정부지원금 지급 및 관리

1) 타당성조사 지원

- (지원금 지급) 지원사업별로 확정된 지원금 전액을 일시 또는 분할 지급
 - ※ 단, 본타당성조사 지원의 경우, 공단이 사업대상국 관련 부처로부터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협력 의향 등을 서면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가능
- (중간 점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사업수행의 계속 여부 판단
 - * 공단은 필요 시 타당성조사 수행현황 확인을 위해 관계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할 수 있음

2) 설치지원

- (선금금 지급)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별로 확정된 지원금 전액을 기준으로 70% 범위 내에서 선금금 지급 가능*
 - * 단, 공단이 사업대상국 관련 부처로부터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협력 및 시범사업에 대한 협력의향을 서면 확인 후 선금금 지급 가능함
- (잔금 지급)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사업수행 계속 여부 결정된 지원기업에 한하여 30% 잔액 지급
 - * 공단은 필요 시 감축설비 설치확인을 위해 관계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할 수 있음

13. 최종평가 및 정부지원금 정산

- (최종평가) 지원기업의 최종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성공”, “실패”, “평가불가*” 판정
 - * 천재지변, 상대국 관련법령 제·개정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업 진행 불가
- (성공, 평가불가)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실시하여 집행잔액 환수
- (실패)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
 - ※ 평가기준은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관리지침」 별표 5 참고
- (정부지원금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지원금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에 대해 사용의 적정성, 사업 외 사용 여부 등 검토하여 정산

14. 국제감축실적 확보 및 분배(설치지원)

- 지원기업은 감축설비 설치 완료 후 국제감축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보고하고 감축실적 발행 절차 이행
- 발생한 국제감축실적은 공단과 지원기업간에 분배하며, 공단이 분배받아야 하는 국제감축실적(양)은 지급된 정부지원금 대비 국제감축실적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관리지침」 제8장 및 별지6, 별표6 참고

15. 타당성조사 결과의 확정 및 시범사업 연계 추진(타당성조사 지원)

- 지원기업은 심의위원회 최종평가에 따라 확정된 타당성조사 결과(최종보고서 국·영문)를 공단에 제출
- 공단은 사업 추진 가능성이 확인된 사업에 대해 본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및 설치지원 사업으로 참여·신청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은 이에 대해 우선 검토 필요
- 공단은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완료 후 지원사업의 개발 추진 상황, 설치 지원 사업으로의 연계 추진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 필요

※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관리지침」 제9장 및 별지4, 별지6 참고

16. 기타 유의사항

-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의 지원범위는 인건비 및 경비에 한함
 - (인건비) 지원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의 급료*
 - * 총 사업비의 40% 이내로 산정 원칙
 - (경비) 국내·외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위탁용역사업비*
 - *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산정 원칙

-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비용의 항목 및 인정기준 등에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관리지침」 별표3에 따르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기업이 부담
- 예비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민간부담금 중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필요
 - 지원기업은 공단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민간부담금을 사업비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 본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환경산업기술원, 한국플랜트 협회 등 정부의 타당성조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사업도 신청 가능하나, 동일 조사항목 및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불가
 - 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 작성 시, 기 지원받은 조사항목 및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사항을 계획으로 작성하며, 기 지원 항목과 중복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입증·기술하여야 함
- 2022년 국제감축 시범사업 설치지원 사업의 지원범위는 감축설비 투자비에 한하며, 운영비 및 기타비용은 지원 불가
 - (감축설비 투자비) 설비구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운전비
 - (운영비) 컨설팅비, 행정비용,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지원 불가
 - (기타비용)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시설철거비, 인허가 비용 등 지원 불가
- 지원기업은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관리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이 부담
 -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보류 또는 시범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공모 일반 분야>

Q. 폐기물 및 물관리 부문 감축사업만 신청 가능한가요?

A. 그렇습니다. 「2022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국제감축 사업으로서, **환경부문**(폐기물 및 물관리) 감축사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기물 취급 및 처리, 매립가스 소각 및 활용, 소수력발전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Q. 중소·중견기업만 신청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발굴·추진할 역량이 있는 국내기업은 **기업규모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공공기관 포함) 단, 공고문에 게시된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Q.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규모의 차이가 있나요?

A. 기업규모와 관계 없이 **지원 규모는 동일합니다**.

Q. 동일 기업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본 타당성조사/설치지원** 중 정부 **지원범위**를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발굴 단계 사업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결과에 따라 **본 타당성조사/설치지원** 등 **국제감축사업 전주기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사업의 경우 **본 타당성조사** 이후 **설치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단 연도별 정부재원 소요에 따라 지원 내용은 변동 및 취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방문하여 설명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공정한 사업 선정 평가를 위해, 필요 시 신청기업의 수행책임자 분들에게 심의위원회 출석 및 사업내용 등 발표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신청기업에게 공통적으로 안내드릴 것입니다. 그 외 사업설명을 위한 개별적인 방문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심의에 앞서 제출하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가 미비할 경우 수정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를 위해 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유선 설명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Q. 선정평가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공단에서 심의위원회 이후 사업선정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보드릴 예정입니다.

<설치 지원 관련>

Q. 최종선정 이후 사업취소가 가능한가요?

A. 지원사업 선정 이후에도 시범사업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상대국의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업포기가 아닐 경우, 정부지원금 반납과 더불어 사업포기각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공모 신청이 불가하니, 사업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위반, 당초 계획(목적) 외 사용 등 위반사항에 따라 신청제한기간 변동 가능

Q. 국가 간 상응조정,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을 위한 취소 등은 국제감축실적 분배시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A. 국제 감축실적 발급량*에서 국가간 상응조정 및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 등을 위해 취소한 국제감축실적을 제외한 시범사업 확보량에 대해 전문기관과 지원기업간 감축실적을 분배하게 됩니다.

* 상응조정,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을 위한 취소 등의 경우 양자협력 및 사업 초기시점 결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협약시 총 예상 감축량 기준 분배량을 사전 계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본 타당성조사(본타) 지원 관련>

Q. 타당성조사 지원 규모 및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A. 타당성조사 지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본타당성조사 지원으로 구분되며, 지원기업이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검토 및 심의위원 평가시 사업 개발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하며, 지원 규모는 지원 사업 1건당 예타 2억, 본타 4억까지 지원하며, 타당성조사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Q.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는 신청업체에서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한가요? 또는 보고서 활용을 위한 의무가 있나요?

- A. 타당성조사 지원은 국제감축실적에 대한 분배 의무가 부여되는 설치지원과는 달리, 국제감축사업 발굴, 개발 지원 성격의 사업입니다. 타당성조사의 결과물(보고서)은 환경부의 국제감축 시범사업 결과물임을 명시할 경우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신청시 본타 및 설치지원 신청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성이 확인 된 경우 환경부 국제감축 시범사업으로 추진에 동의가 필요합니다.